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05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80,249,370원, 교육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12,528,0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20,727,160원, 교육세 3,227,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redacted]시 [redacted]구 C 대 14,88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분의 4 지분을,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5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9. 5.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9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재산세(토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육세	총 고지세액
A	62,640,140 원	17,609,230 원	12,528,020 원	92,777,390 원
B	16,138,410 원	4,588,750 원	3,227,680 원	23,954,840 원
합 계				116,732,230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0년 이상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1999. 2. 1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종합의료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집행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redacted]도지사는 1999. 2. 12.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 나목 소정의 지방산업단지인 D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redacted]북도고시 E)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개발실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지정·결정되었다.

2) [redacted]북도지사는 2002. 7. 4. 구 산업입지법 제37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redacted]북도공고 F)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redacted]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인 2002.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redacted]공사와 체결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1999. 6. 29.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8. 7.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상에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평탄화 작업 등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나, 인근 주민들이 임의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 부과대상인 토지가 위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는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34 판결 참조).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조성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언제든지 지정된 용도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 경과 및 법률상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종합의료시설이 건립되지 않고 있는 동안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는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그 경작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지방세법령에서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농지가 농업의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이를 빌미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건축물 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까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농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의로 경작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신의 토지를 직접 농업 생산활동에 제공·활용한다고 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의 분리과세로 인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99. 2. 12. 이 사건 사업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됨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시계획시설(현행법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까지 의제되었다고 할 것인데(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이후 2002. 7. 4.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까지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고(구 산업입지법 제37조 제6항, 구 도시계획법 제70조), 실제로도 종합의료시설 용지로서 조성이 완료되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용지 조성이 완료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언제든지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9장 재산세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8조(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①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공사완료공고)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 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끝.